

◎ 대통령령제12,119 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87. 4. 1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개정령
-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시설 및 설비기준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물투기금지지역)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 조제1 항 제2 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

1. 해안 및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부터 1만미터이내의 해역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보존을 위하여 환경청장이 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3. 도로변, 철도변 또는 관광지로서 환경청장이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5. 농업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청장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제3조(쓰레기를 스스로 처리 하여야 하는 자)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안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는 자는 1 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보관·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오수정화시설 설치 지역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단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과 법 제9 조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을 말한다. 다만,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 합류식관거가 설치된 지역과 환경청장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를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이라 함은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건축면적(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2 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1천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1 일 거주·체류인원이 50인 이하인 차고·창고 기타 환경청장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은 이를 제외한다.

제5조(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건물등) 법 제1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건물 기타 시설물은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공원·광장 기타 공중의 집합소 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합류식관거가 설치된 지역의 건물 기타 시설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과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그 하수가 합류식관거로 유입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건물 기타 시설물과 환경청장이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제6조(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할 축산시설의 범위) 법 제15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축산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 과 같다.

제7조(내부청소의 대집행 대상시설) 법 제16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내부청소에 관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2.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정화조

제8조(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에 관한 협의) 환경청장이 법 제2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1. 1 일 처리용량이 100킬로리터이상이 분뇨처리시설
2. 처리용량이 250세제곱미터이상이 분뇨정화조
3. 처리용량이 250세제곱미터이상이 오수정화시설
4. 면적이 5 만제곱미터 이상인 쓰레기매립시설 또는 1 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소각·재생분류·퇴비화 등의 방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
5.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 일 처리능력 5 톤이상인 소각·분해·중화방법에 의한 처리시설 또는 1 일 처리능력 1 톤이상인 시멘트고형화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

제10조(기술관리인의 자격등) 법 제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 및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토목기사, 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2. 분뇨정화조의 경우는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또는 이공계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쓰레기처리시설 및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기계기사, 토목기사, 화공기사 또는 환경기사

제11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를 위하여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술관리 능력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의 경우는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2. 분뇨정화조의 경우는 분뇨정화조의

제조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
3. 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4.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
5.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6. 환경청장이 제 1 호 내지 제 5 호 각호의 해당자에 준한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 횟수 또는 방법
- 제12조**(폐기물처리 관련 교육대상자) 법 제2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기술요원”이라 한다)
2. 법 제2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사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2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산업폐기물처리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2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5. 법 제2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기술요원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4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중 면적이 5 만제곱미터 미만인 쓰레기매립시설의 설치승인 및 중요사항의 변경승인
2. 법 제17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법 제1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법 제2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② 법 제4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명령
 2. 법 제17조 제 1 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
 3. 법 제1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4. 법 제1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중요사항의 변경등록
 5. 법 제1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법 제1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6. 법 제1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법 제1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법 제2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7.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등에 관한 법 제24조의 권한
 8. 법 제26조 제 2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법 제2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개선명령, 시설사용정지명령
 9.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1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14조**(과태료의 부과등)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7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오물청소법시행령의 폐지) 오물청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오물청소법시행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오물청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폐지되는 오물청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오물청소법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중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이 영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 시설에 갈음하여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건물 기타 시설물은 이 영 제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정화시설이나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 축산시설 (제 6 조 관련)

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사육시설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400제곱미터미만.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250제곱미터이상

	700제곱미터미만
소 사육 시설	면적 700제곱미터이상 1,200제곱미터미만,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350제곱미터이상 600제곱미터미만
말 사육 시설 (경마장에 부속된 말사육시설을 포함한다)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200제곱미터미만,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600제곱미터미만
닭 · 오리 사육 시설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다만,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주: 동일사업장(동일한 폐수정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사업장을 말한다)내에서 2개이상의 축산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대상으로 한다.

$$\frac{\text{제 1 축산시설의 면적}}{\text{해당 축산시설 기준 면적}} + \frac{\text{제 2 축산시설의 면적}}{\text{해당 축산시설 기준 면적}} + \dots \geq 1$$

◇ 廢棄物管理法施行令 制定理由

廢棄物管理法이 制定(1986. 12. 31法律 第3904號)되어 1987. 4. 1부터 施行됨에 따라 同法에서 委任된 사항과 그 施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의 規模를 建築延面積 1,6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상地域을 特別清掃地域과 共同住宅을 建設하는 地域으로 하되, 下水處理場의 處理區域중 雨水汚水分流式 下水道가 設置된 地域은 汚水淨化施設의 設置를 免除하고 合流式管渠가 設置된 地域은 糞尿淨化槽을 設置하도록 함(令 第 4 條 및 第 5 條).

나. 畜産施設로부터 발생하는 水質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畜産施設중 일정한 企業性 規模의 돼지 사육시설, 소 사육시설, 말 사육시설등에 대하여 畜産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하도록 함(令 第 6 條 및 別表 1). 다. 母法에서 일정한 規模이상의

汚水淨化施設 및 糞尿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内部清掃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市·郡에서 그 化執行을 하고 費用을 徵收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代執行을 할 수 있는 汚水淨化施設 및 糞尿淨化槽의 規模를 處理用量 10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함(令 第 7 條).

라. 廢棄物處理施設을 효율적으로 유지·管理하기 위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技術業務를 담당할 技術管理人員을 두어야 할 대상 施設을 그 處理用量이 250세제곱미터이상인 糞尿淨化槽 및 汚水淨化施設등으로 하고, 技術管理人員의 資格을 정함(令 第 9 條 및 第 11 條).

◎ 建設부령제418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1987. 3. 30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교시설

제5조제 1항중 제 2호·제 5호 및 제 6호를 삭제한다.

제 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 (주거용시설의 범위) 영 제 7 조 제 4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6조중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영 제 7 조 제 1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으로 한다.

제7조중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3조의 2 제 5항제 5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 자가소유하던 토지의면적	주택건설사업 자가소유하던× 토지의면적
---------------------------	----------------------------

당해사업지구의공공시설용지면적

당해사업지구총면적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택지조성원가산정표

[별표]

구분	조성원가구성비목	내역
직접비	용지비 및 그 부대경비	용지매입비·조사비 및 등기비
	조성비 및 그 부대경비	용지조성비 및 설계비
	직접경비	당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이주대책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간접비	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기타 일반관리비에 소유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경비로 산정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times \frac{\text{당해사업시행지구의총사업비}}{\text{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판매비	광고선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
	간접비용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의 상계액 $\times \frac{\text{당해사업시행지구의총사업비}}{\text{사업시행자의총사업비}}$

주: 간접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영업외수익이 영업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을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제하고, 영업외 수익이 영업외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의 연면적중 주거용시설로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하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에 종교시설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범위에

종교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 2조제 5호).

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을 주거용시설로 하도록 함(영 제5조의2)다. 종전에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를 협의매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종전 토지의 40퍼센트까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종전의 토지면적중 당해 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토지까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영 제 7조제 2항).

라. 모법에서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택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택지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투자된 용지매입비·조성비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켰던 것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보건사회부령 제797호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1987. 3. 18

1. 숙박업

가. 호텔업

구분	시설 및 설비 기준
객실	(1) 객실은 30실이상이어야 한다. (2) 객실은 양식 또는 한식으로 하고, 다음의 구조와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1객실의 바닥면적은 양식의 경우에는 9 제곱미터이상 한식의 경우에는 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침구는 객실이 양식인 경우에는 양식침구 이어야 한다. (다) 각 실마다 수세식 변기 및 냉·온수도전을 설치한 적당한 면적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객실의 출입구 및 창은 충분한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

	(매)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옷장 및 옷걸이를 갖추어야 한다. (사) 당해 시설에 상응하는 냉·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 (아) 객실이 양식인 경우에는 의자와 탁자를, 한식인 경우에는 방석을 갖추어야 한다. (자) 객실 및 객실과 객실 및 복도는 벽으로 차단하고,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1) 적당한 면적의 현관과 로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설비를 갖춘 조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조리에 적당한 면적이어야 한다. (나) 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다) 출입구와 외부와 접하는 창등에는 방충 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매연·증기 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설비를 갖춘 식당을 설치하여야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p>한다.</p> <p>(가) 접객에 불편이 없는 적당한 면적이어야 한다.</p> <p>(나) 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p> <p>(다) 적당한 수의 식탁과 의자 또는 방석을 갖추어야 한다.</p> <p>(라) 외부와 접하는 창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p> <p>(4) 환기·채광·조명·방습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p> <p>(5)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당한 면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p>

나. 콘도미니엄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객 실	<p>(1) 동일 단지안에 50실이상이어야 한다. (중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p> <p>(2) 세대당 전용면적이 2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p> <p>(3) 객실의 바닥은 아스타일·모노륨 등으로 하여야 한다.</p> <p>(4) 욕조·세면대 및 샤워시설과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욕실이 있어야 한다.</p> <p>(5) 가스렌지·싱크대 및 냉장고와 5인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취사용구를 비치하고,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와 환기 시설을 갖춘 조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6) 출입문의 자물쇠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잠글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p> <p>(7)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p> <p>(8)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p> <p>(9) 화장대·옷장·이불장·텔레비전·의자 등 필요한 기구 및 침구를 비치하여야 한다.</p> <p>(10) 당해 시설에 상응하는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 조건상 냉방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p>
기타시설	<p>(1) 1,653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p> <p>(2)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현관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p> <p>(3) 6층이상의 건물에는 수용인원이 상응하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4) 다음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 이상의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승강기 1대이상(승강기가 설치된</p>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p>콘도미니엄에 한한다)</p> <p>(나) 객실·복도의 비상 등 및 비상유도등</p> <p>(다) 조리장의 냉장고</p> <p>(라) 폐수 및 급수처리시설</p>

다. 여관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객 실	<p>(1) 객실은 10실(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7실) 이상이어야 한다.</p> <p>(2) 객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p> <p>(가) 침구류의 보관시설을 하여야 한다.</p> <p>(나) 옷장 및 옷걸이를 갖추어야 한다.</p> <p>(다) 객실의 출입구 및 창은 충분한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p> <p>(라) 숙박자를 위한 충분한 침구를 갖추어야 한다.</p> <p>(마) 접객을 위한 적당한 탁자 및 의자 또는 방석을 갖추어야 한다.</p> <p>(바) 당해 시설에 상응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집중관리식 난방시설 2) 개별온수보일러식 난방시설의 경우 아궁이는 객실 출입문으로부터 1미터이상 떨어져 있어 연탄가스 등이 객실에 새어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탄에 의한 난방시설의 경우 객실내에 연탄연소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시설	<p>(1) 적당한 면적의 현관과 접객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p> <p>(2) 숙박자를 위한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조리장은 가. 호텔업의 기타시설(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p> <p>(3) 숙박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다음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객실에 욕실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남녀별로 구분된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p> <p>(나) 각층에 남녀별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과 분리된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되, 외부와 접하는 창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p> <p>(다) 각층에 세면시설</p> <p>(4) 환기·채광·조명·방습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p>

라. 여인숙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객 실	<p>(1) 객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2) 객실을 개실로 구획할 경우에는 1객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3) 2층 침대를 두는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의 간격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4) 숙박자를 위한 충분한 침구를 갖추어야 한다.</p> <p>(5) 옷장 또는 옷걸이를 갖추어야 한다.</p> <p>(6) 객실의 출입구 및 창은 충분한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p> <p>(7) 당해시설에 상응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p> <p>가) 중앙집중관리식 난방시설</p> <p>나) 개별온수보일러식 난방시설의 경우 아궁이는 객실출입문으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연탄가스 등이 객실에 새어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연탄에 의한 난방시설의 경우 객실내에 연탄연소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기타시설	<p>(1) 출입구에는 숙박자의 신발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p> <p>(2) 숙박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다음시설을 하여야 한다.</p> <p>가) 욕실 또는 샤워시설(인근에 공공목욕장이 있어 숙박객의 목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나) 남녀별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과 분리된 곳에 남녀 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외부와 접하는 창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p> <p>다) 세면시설</p> <p>(3) 숙박자를 위한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리장은 가, 호텔업 기타시설 (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p> <p>(4) 환기·채광·조명·방습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p>

2. 목욕장업

가. 일반목욕장업중 공동탕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p>(1) 현관 탈의실의 출입구·탈의실 및 욕실은 각각 남녀별로 구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2) 탈의실 및 욕실은 목욕장 밖으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욕 실	<p>(1) 바닥면적은 26제곱미터(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2)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되, 그 표면은 도자기·돌·인조석 또는 몰탈로 마무리하여야</p>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p>한다.</p> <p>(3)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 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p> <p>(4) 벽과 천정은 열기 및 습기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p> <p>(5) 나무·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재료로 된 적정수량의 물통 및 깔판을 비치하여야 한다.</p> <p>(6) 오수의 배출구를 설치하여 욕실안에서 사용한 물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오수조는 욕외에 설치하되, 오수조 내에 내수성 자재를 사용한 악취의 발생, 오수의 침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하여야 한다.</p> <p>(7) 수세식 소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8) 바닥면적 5제곱미터당 냉·온수도전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9) 냉·온수를 쓸 수 있는 샤워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10) 발한실을 설치할 경우 그 바닥면적은 욕실바닥 면적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고, 출입문은 높이 1.6미터 이상 폭 0.6미터 이상으로 하되, 실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욕 조	<p>(1) 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2) 깊이는 6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3) 내부는 콘크리트로 하되, 타일 등 내수성 자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p> <p>(4) 최하부의 적당한 곳에 욕조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p> <p>(5) 상단의 적당한 곳에 냉·온수도전을 설치하여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탈 의 실	<p>(1) 바닥면적은 18제곱미터(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2) 바닥은 나무·리노름 등 내수성 자재를 사용하고 양탄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입욕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부착한 적당한 수의 옷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4)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 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p> <p>(5) 탈의실 안에 입욕자를 위한 편의시설을</p>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하여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가. 공동탕업의 욕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2) 내지 (7)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탈의실· 휴식실및 안 마 실	(1) 탈의실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휴식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하는 탈의실 또는 안마실과 별개의 시설로서 하여야 하며, 그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밀실로 구획되어서는 아니된다. (3) 안마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하는 탈의실 또는 휴식실과 별개의 시설로서 하여야 하며, 그 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밀실로 구획되어서는 아니된다. (4) 바닥은 나무·리노륨 등 내수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입욕자의 휴식에 필요한 가운·짧은 속바지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가. 공동탕업의 탈의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3) 내지 (7)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화장실· 현관 및 기타 부 대시설등	화장실·현관 및 기타 부대시설은 가. 공동탕업의 동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마. 특수목욕탕업중 터키탕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1) 관광사업법에 의한 숙박업소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개실로 구획되어야 한다. (2) 바닥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욕 실	(1) 욕조·웃장·세면기 및 냉·온수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 공동탕업의 욕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2) 내지 (6)과 나. 가족탕업의 욕조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한다. (3) 입욕자의 발열을 촉진하는 한증함을 설치 하되, 그 내부는 입욕자가 증기배출구와 직접 접하지 아니하는 구조로하여야 한다. (4) 공동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라. 사우나탕업의 욕실의 시설 설비기준(4)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5) 욕실의 출입문은 높이 1.8미터이상 폭 0.7미터이상으로 하고, 높이 1.2미터로 부터의 상부에는 0.3제곱미터 이상의 투명 유리를 끼워야 한다.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6) 입욕자가 휴식할 수 있는 적당한 휴식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화 장 실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각층에 남녀별로 구분 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 또는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실등	(1) 대기실은 적당한 면적을 보유하고 입욕자가 대기하는데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의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신발장은 현관 기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 타 부대시설	기관실·보일러실·연료저장장 및 재·연소 진처리장은 가. 공동탕업의 동시설의 시설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수영장업

가. 일반수영장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수 영 조	(1)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물의 깊이는 0.9미터 내지 2.7미터로하고, 수영조의 벽측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또는 경기용 수영장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바닥과 벽면은 내수성 자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하고, 바닥은 15분의 1 내지 20분의 1의 경사로 하여 미끄러지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의 깊이가 1.7 미터이상인 곳은 더 급한 경사로 할 수 있으나 함정을 이루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최하부의 적당한 곳에 수영조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되, 배수구에는 일정한 크기의 고흥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수면에 뜨는 찌꺼기의 제거 및 일정한 수면유지를 위하여 수영조의 벽면에 배수가 될 수 있는 물넘기기 장치를 4.5미터 간격 으로 설치하고, 이 장치를 넘어 배수되는 물은 순환용 펌프로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 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주변의 통로의 폭은 1.2미터이상(핸드 레일을 설치한 경우에는 1.2미터만으로 할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욕자의 탈의 및 착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입욕자를 위한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입욕자를 위한 음용수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화 장 실	(1) 바닥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탈의실과 연결되도록 하되,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 관	(1) 바닥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입욕자의 신발을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적당한 수의 신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 타 부대시설	(1) 기관실·보일러실 및 연료저장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재·연소진 처리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과 재등이 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폐수열 회수장치 등 적절한 에너지절약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욕조수를 순환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일반목욕장업중 가족탕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가족탕은 개실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욕실과 탈의실을 구분하고, 외부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욕 실	(1) 냉·온수도전, 샤워시설 및 세면기를 설치하고, 물통 및 깔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가. 공동탕업의 욕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2) 내지 (6)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욕 조	내수성 재제를 사용하고, 그 상단에는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냉·온수도전을 설치하며, 최하부의 적당한 곳에 욕조안의 물을 완전히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탈 의 실	가. 공동탕업의 탈의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1) 내지 (4)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화 장 실	수세식으로 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일반목욕장업중 한증막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가. 공동탕업의 구조의 시설 및 설비기준 (1) (남탕·여탕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및 (2)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한 증 막	(1) 바닥면적은 16제곱미터(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한증막은 내화벽돌 또는 기타 내화성 재료로 반원추형으로 축조하되, 두께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한증막의 출입문은 높이 1미터 폭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내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욕 실	(1) 바닥면적은 26제곱미터(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온수욕조 및 냉수욕조는 각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냉·온수도전을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냉·온수를 쓸 수 있는 샤워시설을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가. 공동탕업의 욕실의 시설 및 설비 기준(2) 내지 (6)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탈의실및 휴 식 실	(1) 바닥면적은 26제곱미터(음·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세식 화장실을 시설하여야 한다. (3) 가. 공동탕업의 탈의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내지 (7)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충분한 수의 포대를 비치하여야 하며, 포대는 자연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기 타 부대시설	가. 공동탕업의 기타 부대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1) 및 (2)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특수목욕장업중 사우나탕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가. 공동탕업의 구조의 시설 및 설비기준 (1) (남탕·여탕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2)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되, 공중 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호텔(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은 제외한다) 여관 및 여인숙이 있는 건물내에는 개설할 수 없다.
욕 실	(1)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냉·온수도전 6개 이상, 냉·온수를 쓸 수 있는 샤워시설 6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한실은 욕실 바닥면적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은 높이 1.8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으로 하되, 실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3.3제곱미터 이상의 온수욕조 및 냉수욕조를 설치하고, 욕조상단 적당한 곳에 냉·온수도전(냉수욕조에는 냉수도전)을 설치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p>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오수등이 수영조로 침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9) 도약대가 있는 수영장에 있어서는 도약대의 돌출부의 최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범위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10) 도약대는 주름잡이·고무판 등을 덮어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1) 실내 수영장에 도약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천정과 도약대 사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탈의실·세정장및 화장실	<p>(1) 수영자가 수영조에 들어가기 전에 탈의실·화장실·세정장을 거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p> <p>(2) 탈의실 및 세정장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외부로 부터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 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p> <p>(3) 탈의실에는 수영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부착한 적당한 수의 옷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4) 세정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과 수도꼭지를 각각 수영자 50인당 1개 이상 설치하고 충분한 물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절기에만 개장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온수 샤워시설 및 수도꼭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5)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별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는 수영자 60인당 1개 이상, 대변기는 소변기 5개당 1개 이상으로 하고, 여자용 변기는 수영자 40인당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6) 화장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충분한 환기시설과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7) 실내수영장 또는 야간수영을 하는 수영장의 수면 기타 주요장소에는 10룩스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p>
기 타 부대시설	<p>(1) 수영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구명대 등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고 감시탑을 설치하여 수상안전요원 3인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p> <p>(2) 응급환자의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 구호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나. 특수수영장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수 영 조	<p>(1) 헬스크럽(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연계하여 운영되거나, 호텔 투숙객을 위하여 운영되는 특수수영장의 수영조의 면적은 1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p> <p>(2) 수영조의 깊이는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적절한 깊이로 하여야 한다.</p> <p>(3) (1) 및 (2)외에는 일반수영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 (3) 내지 (11)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탈의실·세정장및 화장실	<p>가. 일반수영장업의 탈의실·세정장 및 화장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되는 헬스클럽업업을 위하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기 타 부대시설	<p>(1) 수영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구명대 등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고, 수상 안전요원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p> <p>(2) 응급환자의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 구호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4. 이용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p>(1) 업소의 바닥은 콘크리트·타일·리노륨등 내수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p> <p>(2) 업소의 바닥면적은 1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작 업 실	<p>(1) 이용용의자의 수는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2대 이내로 하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적 4제곱미터 마다 1대이내로 하여야 한다.</p> <p>(2) 세면 또는 세발시설은 도자기·타일 등 내수성 자재로 하고, 물의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3) 충분한 창을 설치하여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창 설치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하여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1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p> <p>(4)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p> <p>(5) 증기소독기 및 끓이는 소독기와 이용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p> <p>(6) 이용을 위한 충분한 수의 기구 및 수건을 갖추어야 한다.</p> <p>(7) 응접장소 및 작업장소 또는 의자 및 의자를 구획하는 커어튼·칸막이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장애물을 따로 보관하는 등 이를 설치하기</p>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위한 각종 준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이용소의 작업장소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화 장 실	화장실(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세식 화장실)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미용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1) 업소의 바닥은 콘크리트·타일·리노륨등 내수성 자재로 하여야 한다. (2) 업소의 바닥면적은 1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작 업 식	(1) 미용용 의자의 수는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2대이내로 하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면적 4제곱미터마다 1대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소의 피부 미용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세면 또는 세발시설은 도자기·타일 등 내수성 자재로 하고, 물의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충분한 창을 설치하여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창 설치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하여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10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증기소독기 및 끓이는 소독기와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6) 미용을 위한 충분한 수의 기구 및 수건을 갖추어야 한다. (7) 응접장소 및 작업장소 또는 의자 및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장애물을 따로 보관하는 등 이를 설치하기 위한 각종 준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미용소의 작업장소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화 장 실	화장실(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유기장업
가. 공통 기준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실 내 유 기 장	(1)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고, 내부의 벽은 흰색·초록색 또는 노란색 등 밝은색 계통의 하나의 색채로 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타일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유기기구는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충분한 창을 설치하여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유기장에는 기계에 의한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5) 10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자유기장을 제외한다) (6) 1개소이상의 세면시설 및 화장실(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내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업소 안에 휴지통 및 청소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실 외 유 기 장	(1) 바닥은 유기방법에 따라 안전하고 물이 잘 빠지며,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유기기구는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1개소 이상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유기장으로부터 100미터안에 손쉽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개별기준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당구장업	유기기구 1대당 16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자유기장업	성인용 전자유기장업 (1) 바닥면적은 4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4분의 1 이상을 휴식장소·통로 및 환전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휴식장소에는 5인용 안락의자 1조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알·오·엠기억소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을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박성 또는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p>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계식 유기기구 또는 체련용유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비디오 오락기구가 전체유기기구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3) 유기기구의 화면에 이용자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자외선 차단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p> <p>(4) 60룩스 이상이 되도록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p> <p>(5) 유기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음향이 영업장 밖에서 들리지 아니하여야 한다.</p> <p>(6) 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영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p>
청소년 용전자 유기장 업	<p>(1) 바닥면적은 2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4분의 1 이상을 휴식장소·통로 및 환전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휴식장소에는 5인용 안락의자 1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p> <p>(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알·오·엠기역소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을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기종(알·오·엠기역소자와 알·에이·엠기역소자가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연산·기억·출력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체련용 유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와 체련용 유기기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개인용컴퓨터 기종을 설치하여야 한다.</p> <p>(3) 성인용 전자유기장의 (3) 내지 (6)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종합유원시설업	<p>(1) 대지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2) 유기기구는 주행식, 고정식, 스포츠관람형 유기기구를 각각 2종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3) 음수대·식당·매점·휴식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4) 방송시설·조명시설·발전시설, 상·하수도, 의무실, 미아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기타 유기장업	<p>(1) 바닥면적은 유기에 적당한 면적이어야 한다.</p> <p>(2)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를</p>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위생관리 용역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사무실	사무실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치 이상의 건축물 바닥담기(바닥광택기)를 5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5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충분한 수의 안전벨트·안전모·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실내의 분진·탄산가스·일산화탄소·온도 및 상대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각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창 고	장비(운반차량을 제외한다) 및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1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시설을 하여야 한다.

8. 세탁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구 조	<p>(1) 업소의 바닥은 콘크리트·타일·리노름 등의 내수성 자재로 시설하여야 한다.</p> <p>(2) 업소의 바닥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끝손질 작업만을 하는 업소와 읍·면 지역의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유류탱크가 분리되어 있는 세탁기의 유류탱크의 설치장소는 화재 발생시에 세탁물에 불이 옮겨붙지 아니하도록 내화성 자재를 사용한 벽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p>
작 업 실	<p>(1) 작업실 내의 적당한 곳에 세탁기 또는 다리미대 등 당해 영업에 필요한 세탁용 기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p> <p>(2)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에는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약품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 약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p> <p>(4) 처리되지 아니한 일반 세탁물과 병원 등에서 맡긴 질병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탁물은 이를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분리된 덮개가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p>

9. 위생처리업

구 분	시 설 기 준
작업장 및 창고	<p>(1) 작업장은 청결하고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p> <p>(2) 작업장 및 창고는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서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p>(3) 작업실은 적당한 내수성 자재로 벽을 설비하여야 하며 주가와 독립되어야 한다.</p> <p>(4) 작업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하고, 충분한 배수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p> <p>(5) 각 작업장 및 창고의 천정은 내수성 자재로 하고 창문 등에 적절한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p> <p>(6) 작업장에는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손 씻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수의 갥의실 또는 옷장을 설비하여야 한다.</p> <p>(7) 작업장에는 세척시설·살균시설·건조시설·포장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각각 독립된 시설이어야 한다.</p> <p>(8) 작업장중 살균시설·건조시설 등에는 살균소독에 필요한 기계류 및 살균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p>
급수시설	급수는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화 장 실	<p>(1)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고, 변기뚜껑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2) 화장실의 바닥·벽·천정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하여야 하고, 창문에는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p>
기타 위 생 시설	폐기물 용기는 목재외의 내수성 자재로 된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서 뚜껑이 있어야 한다.

위생접객업소의 등급기준(제 3 조제 1 항 관련)

1. 숙박업

업 종	등 급	등 급 기 준	
		시 설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채점기준에 의한 채점점수

호텔업	감등급	객실 40실이상 자동환기시설	160점이상
	올등급	객실 30실이상 40실미만	140점이상 160점미만
여관업	감등급	객실 20실이상 • 욕실 및 수세식 변소가 부설된 객실수가 전체객실 수의 3분의1이상 • 중앙집중관리식 난방시설 • 적절한 주차시설	160점이상
	올등급	객실 20실미만	140점미만 160점미만

2. 공중목욕장업

업 종	등 급	등 급 기 준	
		시 설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채점기준에 의한 채점점수
공동탕	감등급	욕실면적 45제곱 미터 이상 발한실 4.5제곱 미터 이상 냉수욕조 1개이상 고온수욕조 1개 이상	160점이상
	올등급	욕실면적 45제곱 미터 미만	140점이상 160점 미만

3. 수영장업

업 종	등 급	등 급 기 준	
		시 설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채점기준에 의한 채점점수
일반수 영 장	감등급	수영조 3개이상 수영조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	160점이상
	올등급	수영조 3개미만 수영조면적 330 제곱미터미만	140점이상 160점미만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 동방포루마 269-1 7 1 8
276-0123-4